

(복수전공, 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)<개정 2007.3.1. 2020.9.1.>

제43조(전공) ① 전공은 제4조에 따라 입학한 학생의 소속 학과(부)의 전공을 주전공(제1전공)으로, 그 외 전공을 제2전공으로 한다. 다만, 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주전공(제1전공)으로 할 수 있다.<개정 2009.3.1., 2020.4.1., 2020.9.1.>

② 학부 및 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3조의2(공학교육 프로그램 결정)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공과대학 소속 학과(부) 또는 전공의 프로그램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07.3.1.><개정 2009.3.1.>

제43조의3(다전공) 다전공이라 함은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2학년부터 주전공을 둘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. 다전공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20.9.1.]

제44조(부전공) ① 전공학과(부) 이외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한다.

② 삭제 <2011.3.1.>

③ 부전공을 이수하였음을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록한다.

④ 부전공(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5조(제2전공) ① 소속 학과(부)의 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교육과정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로 학위를 수여하고 제2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예외 학과(부)에 대해서는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.<개정 2011.3.1., 2020.9.1.>

② 삭제 <2007.3.1.>

③ 제2전공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, 복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.>

1. 복수전공: 주전공 외에 모집단위가 있는 학과(부) 전공을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전공<개정 2019.3.1., 2020.9.1.>

2. 삭제 <2020.9.1.>

3. 자기설계전공: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 교육과정을 대학의 인정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<신설 2007. 3. 1.><개정 2020. 9. 1.>

4. 융합전공: 둘 이상의 학과(부)·전공 또는 국내외 대학 간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이수하는 전공<신설 2020.4.1.><개정 2020.9.1.>

④ 제2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07.3.1.>

⑤ 교직원복수전공은 교원 양성과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신설 2017.9.1.>

제45조의2 삭제 <2007.3.1.>

제45조의3 삭제 <2007.3.1.>

제45조의4(학·석사연계과정)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4.5 내지 5.5년제 학·석사연계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.<개정 2009.9.1., 2010.9.1.>

② 학·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6 내지 8학기내에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9.1., 2010.9.1.>